

#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숙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5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5일  
발 의 자: 이숙자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 
김경훈, 김영철, 김원중,  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 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 
민병주, 박강산, 박 석,  
유만희, 유정인, 윤영희,  
이봉준, 이원형, 이종환,  
이효원, 장태용, 최민규,  
최진혁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27명)

## 1. 제안이유

-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,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·청소년'에서 '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·청소년'까지 확대하여 희생·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,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지원 사업 대상에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·청소년을 추가하여 규정함.(안 제7조제1항제7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국가보훈 기본법 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7호 본문 중 “자녀”를 “자녀, 손자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교육지원 사업) ① (생 략)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7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, <u>자녀</u>에 해당하는 아동·청소년. 다만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는 배우자, 자녀, 손자녀 이하 6대손까지의 아동·청소년으로 한다.</p> <p>8. (생 략)</p>	<p>제7조(교육지원 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, <u>자녀, 손자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7조(교육지원 사업)제1항제7호	△	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교육지원 비용이 추가발생하나 관련부서 확인결과 대상통계 부재로 <b>객관적 추계가 곤란</b>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동 조례안 제7조(교육지원 사업)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추가 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(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) 확인결과 비용추계를 위한 지원대상(Q) 통계가 없어 **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**

※ 추계 시 활용되는 소요비용 표준 산식 및 검토사항

$$\text{교육지원 비용} = \boxed{\text{지원비(P)}} \times \boxed{\text{지원대상(Q)}} \times \boxed{\text{기간(T)}}$$

- (지 원 비) 서울시 평생교육국 기시행사업(붙임 참조)을 활용하여 추계 검토
- (지원대상)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(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외)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 부재  
 ⇒ 서울지방보훈청 유선상 문의결과 별도의 통계를 보유1)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**객관적인 추계가 어려움**
- (기 간) 2025년부터 계속해서 비용 발생, 추계기간 5년간 발생 전제

- (자체 추계가능성 검토)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유한 통계2)를 활용하여 소요금액 추정하려 하였으나 오류 요인3)이 많아 자체 추계 또한 곤란함

1)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에 대한 통계 부재  
 ⇒ 향후 실태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에 대한 통계를 마련할 시 비로소 정확한 인원이 파악될 것임

2) 문의결과 서울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수권유족(배우자, 대표자녀 등)에 대한 통계는 보유(수권유족 30~54세 기준 2,602명)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추계가능성 검토  
 · 검토결과) 수권유족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고, 대표자녀 1인에 대한 통계이므로 임의 추정시 오차가 클 것으로 예상됨

3)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(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외) 중 6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30~54세 연령을 가진 자녀를 부모세대로 가정하여 추계가능성 검토  
 · 검토결과) 아래와 같은 오류요인 가능성이 존재하여 현재로서는 자체추계 또한 어려움  
 ① 수권유족 외 생존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 ② 수권유족 중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수 ③ 대상자 자녀세대 혼인여부 등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    희    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   중    헌

추계분석관      손    제   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[붙임] 서울특별시 온라인 콘텐츠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비용산출 근거표

## 온라인 콘텐츠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비용 관련 산출 근거표

### ① 대상 인원 증가분 (약 1,000명)

(단위 : 명, 기준 연도: 2024년)

구분	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	관외 아동보호시설 아동	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	가족돌봄청년	합계
인원(명)	400	273	100	277	1,050

### ② <연도별 예상 가입인원>

(단위 : 명, %)

구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대상인원 증가분	1,000명				
연도별 예상 가입률	15%	18%	22%	26%	30%
가입인원(명)	150	180	220	260	300

※ 연도별 예상 가입인원 = 대상인원 증가분 × 연도별 가입률

### ③ <연도별 콘텐츠 정산인원>

(단위 : 명, %)

구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가입인원(명)	150	180	220	260	300
콘텐츠 실정산률	60%				
콘텐츠 정산인원(명)	90	108	132	156	180

※ 연도별 콘텐츠 정산인원 = 가입인원 × 콘텐츠 실정산률

※ 콘텐츠 실정산률은 2024년 서울런 이용 현황 반영

### ④ <연도별 멘토링 신청인원>

(단위 : 명, %)

구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가입인원(명)	150	180	220	260	300
멘토링 신청률	60%				
멘토링 신청인원(명)	90	108	132	156	180

※ 연도별 멘토링 신청인원 = 가입인원 × 멘토링 신청률

※ 멘토링 신청률은 2024년 서울런 이용 현황 반영

5 <연도별 교재 신청인원>

(단위 : 명, %)

구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가입인원(명)	150	180	220	260	300
교재 신청률	50%				
교재 신청인원(명)	75	90	110	130	150

※ 연도별 교재 신청인원 = 가입인원 × 교재 신청률

※ 교재 신청률은 2024년 서울러 이용 현황 반영

6 <연도별 마일리지 지급 인원>

(단위 : 명, %)

구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가입인원(명)	30,150	30,180	30,220	30,260	30,300
마일리지 지급률(%)	15%				
마일리지 지급인원(명)	4,523	4,527	4,533	4,539	4,545

※ 연도별 마일리지 지급인원 = 가입인원 × 마일리지 지급률

자료 : 의안번호(11-02047)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취